##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51 발의연월일: 2024. 9. 13.

발 의 자: 송옥주·이해민·권칠승

이수진 • 박해철 • 추미애

이기헌 • 박희승 • 이병진

한정애・박 정・한민수

박홍배 • 이용우 • 안태준

정을호 · 전종덕 의원

(17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의 손실 등 재해를 입은 이재민 및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일시대피자 등 구호대상자의 보호와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 의료서비스 등 구호의 종류만 열거하고 있고, 구체적인 지원 방법, 지원기간 및 지원대상의 범위 등에 관해서는 하위 규정으로 위임하고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구호기관의 재량에 따라 구호 및 복구 지원 사업이 이루어져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임.

최근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의 경우 원 인 제공자인 아리셀의 유가족 협상 지연으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화성시의 임시주거시설 지원 중단 결정과 번복 등으로 유 가족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재민의 정의에 유가족을 명확히 명시하고, 유가족의 범위를 가족 및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로 확대하도록 하며, 임시주거시설 제공에 필요한 지원항목, 지원기간 등을 명문화하는 등 국가의 재해구호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호기관이 이재민등에게 충분한 구호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제2조 및 제4조의3).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재해구호를 위한 기본원칙) 재해구호의 조치는 국적, 인종, 종교, 성별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아니되며, 재난에 취약한 어린이, 임산부,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

제2조제1호 중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형제·자매 및 친인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나.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 다. 재난으로 주거시설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
  - 1) 유실・붕괴 또는 전도(顚倒) 등으로 인한 주거시설의 상실
  - 2) 수리하지 아니하고서는 주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주거시설의

침수 · 파손

- 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재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조의3(임시주거시설 제공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는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재민등의 재해복구 및 생 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 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재민등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생활안 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1. 숙박비
  - 2. 식사비
  - 3. 구호물품 구입비

- 4. 그 밖에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의 체류지원을 위해 필요한 비용
- ③ 제2항에 따른 예산지원은 제4조의2제1항전단에 따른 이재민등에 게 임시주거시설이 필요한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재민등에 대한 임시주거시설 지원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재민등의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주거시설 제공 등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 발생한 사회재난으로서 이법 시행 당시에도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조의2(재해구호를 위한 기본
	원칙) 재해구호의 조치는 국적,
	인종, 종교, 성별 등에 따라 차
	별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아니되
	며, 재난에 취약한 어린이, 임
	산부,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	1
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	
(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u>주거시설의 손실</u>	<u>다음 각 목의</u>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u>.</u>
사람을 말한다.	
<u>&lt;신 설&gt;</u>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
	<u>다)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u>
	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
	<u>족(형제·자매 및 친인척</u>

<신 설>

<신 설>

<u><신 설></u>

<신 설>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 다. 재난으로 주거시설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피해를 입은 사람
  - 1) 유실·붕괴 또는 전도(顚倒) 등으로 인한 주거시설의 상실
  - 2) 수리하지 아니하고서는 주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주거시설의 침수·파손
- 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 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2. ~ 8. (생 략) <u><신 설></u> 규정한 사람 외에 재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행정안전 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람

2. ~ 8. (현행과 같음)

제4조의3(임시주거시설 제공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재난 이 발생한 경우 이재민등의 재해복구 및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재민등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 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을 지원하여야 한다.
- <u>1. 숙박비</u>
- 2. 식사비
- 3. 구호물품 구입비
- 4. 그 밖에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의 체류지원을 위해필요한 비용

③ 제2항에 따른 예산지원은 제4조의2제1항전단에 따른 이 재민등에게 임시주거시설이 필요한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재민등에 대한임시주거시설 지원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재민등의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